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583 발의연월일: 2023. 8. 1.

발 의 자:김용민·김정호·민형배

최혜영 · 최강욱 · 장경태

임오경 • 문정복 • 유정주

김영호 · 한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 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.

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면책과 민·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, 해당 행위가 수사·재판의 대상

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제14조제2항제2호, 제14조의4 신설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중 "조정 및"을 "조정,"으로, "상담"을 "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"으로 한다.

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4(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책임의 감면 등) ① 교원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 - ②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·운영절차와 제2항에 따른 건의의 대상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
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
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교원의 교육활동 보호) ①	제14조(교원의 교육활동 보호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	②
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	
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	
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	2
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	<u>조정,</u>
<u>상단</u>	<u>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</u>
	<u>송 지원</u>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4조의4(교원의 교육활동으로
	인한 책임의 감면 등) ① 교원
	<u>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</u>
	의2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행위
	를 함에 있어 그의 행위에 고
	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
	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
	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감경
	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- ②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 적인 기준·운영절차와 제2항에 따른 건의의 대상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